마약류 취급보고 주요 변경 사항 안내

❑ 취급자 '전산보고' 적응(계도)기간 운영

○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「마약류 취급보고」 제도는 '18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
○ 시행 후, **취급일 기준 '18년 12월 31일까지 1차 계도를 종료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'19년 6월까지 2차 전산보고 계도(적응)기간을 운영**합니다.

- 취급보고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고 과정상의 일부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잘못 보고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시정하도록 합니다.
- 취급자는 시정사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할기관에 알립니다.

'계도(적응)기간'의 의미

✔ **계도(적응)기간 일지라도** 마약류취급자는 **모든 취급내역을** 법률에 따라 **전산보고 하여야 합니다.**

✔ 다만, **비의도적인 실수,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취급내역 누락, 보고정보 누락 또는 잘못된 입력** 등에 대해 **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정정할 기회를 제공**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<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>

○ 마약류 취급정보를 **허위·조작하여 거짓으로 보고**한 경우

○ **일체 보고하지 않을 경우**

○ **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1차 계도(시정)하였음에도**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

❑ ‘19년 4월 1일부터 제도 시행 전 마약류 재고 전산보고 시작

○ 「마약류 취급보고」 제도와 관련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·마약류 소매업자 중 **5월 18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를 종전 방식에 따라 소진하는 취급자는 ‘19년 4월 1일부터** 예외 없이 **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보고를 시작하여야 합니다.**

- 제도 시행 이전 구입하여 아직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는 ‘19년 3월 31일까지 **특정 일자를 정한 후 해당 일자까지 남아 있는 재고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전산보고를 시작**하여야 합니다.
- 재고등록 이전까지 작성한 관리대장은 반드시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.

❑ 전산 보고 문의처

○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재고 등록이나 취급보고 하는 방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(1670-672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.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재고등록 방법

붙임 **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재고등록 방법**

□ “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” 사이트 접속

(방법1) (주소창입력) **www.nims.or.kr**

(방법2) (포털검색) 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’ 검색 → 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’ 선택



□ “보고 메뉴”에 접속

○ 보고는 ‘양수보고’ 메뉴를 사용하여 보고합니다.

① 시스템 로그인 하고 보고관리 메뉴에서 ‘양수보고’ 선택



② ‘양수보고’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의 ‘신규보고’ 선택



③ ‘신규보고’ 화면에서 상대 마약류취급자로 “재고등록 거래처(최초등록)”로 선택 후 보유 제품별 재고 등록



※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재고등록 가이드 참조
(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> 알림 > 공지사항)